

# 변경대비표

## [집합투자규약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100 년기업 그린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 년 7 월 29 일
3. 정정사유
 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 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(재무상태표 등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제3조(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및 종류 등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 제3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 무)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 (현행과 동일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 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 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
제12조(수익자명부)	①~⑤ (생략)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집합투자업자</u> 로부터	①~⑤ (현행과 동일)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판매회사</u> 로부터 통보

	<p>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	<p>2.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	<p>2.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
<p>제17조(운용 및 투자제한)</p>	<p>2.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</p>	<p>2.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</p>

	<p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제28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제30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차대조표</u></li> <li>2. 손익계산서</li> <li>3. 자산운용보고서</li> </ol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재무상태표</u></li> <li>2. 손익계산서</li> <li>3. 자산운용보고서</li> </ol>
제33조(상환금 등의 지급)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37조(보수)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현행과 동일)</p>
제47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~2.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~2. (현행과 동일)</p>

	<신설>	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
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~5. (생략)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3~5. (현행과 동일)</p>
부칙	-	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100 년기업 그린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 년 7 월 29 일
3. 정정사유
 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박천형 → 안인진)
  - 기타비용 관련 주석 보완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 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 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(재무상태표 등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* 투자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 * 투자실적추이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	*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천형 (차장)채권운용</u>  <신설>	*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안인진 (과장)채권운용</u>  (주6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운용역)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천형 (차장)채권운용</u>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천형</u>  <신설>  다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내역 <u>박천형 &lt;채권운용본부 차장&gt;</u>	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안인진 (과장)채권운용</u>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안인진</u> 주4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운용역)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내역 <u>안인진 &lt;채권운용본부 과장&gt;</u>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<p>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	<p>가. 투자 대상</p> <p>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)</p> <p>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	<p>가. 투자 대상</p> <p>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)</p> <p>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
	<p>나. 투자 제한</p> <p>동일종목 투자제한</p> <p>나.</p> <p>...</p> <p>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</u></p> <p>금전의 차입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나. 투자 제한</p> <p>동일종목 투자제한</p> <p>나.</p> <p>...</p> <p>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</u></p> <p>금전의 차입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<u>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u></p>
<p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다. 기타위험</p> <p>투자신탁 해지 위험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</p>	<p>다. 기타위험</p> <p>투자신탁 해지 위험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</p>

	<p>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p>	<p>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</p> <p>1~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u></p>
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<p>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1) (본문 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1) (본문 생략) <u>추가적으로, 금융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 최근 결산일 기준 갱신</p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	<p>(2) 상환금등의 지급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(2) 상환금등의 지급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<p>최근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</p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<p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</p>
제5부.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등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&lt;신설&gt;</p>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-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<u>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</u>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.</p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<p>(2) 임의해지 (생략) 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</p>	<p>(2) 임의해지 (현행과 동일) 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</p>

	<p>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<p>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가. 정기보고서 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생략)  ② 결산서류 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 · <u>대차대조표</u>  · 손익계산서  ·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  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 -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	<p>가. 정기보고서 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현행과 동일)  ② 결산서류  가.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 · <u>재무상태표</u>  · 손익계산서  ·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  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 -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
	<p>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  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  · (생략)  ·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  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  · (현행과 동일)  ·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<p>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</p>		<p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</p>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100 년기업 그린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효력발생일 : 2022 년 7 월 29 일
3. 정정사유
 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박천형 → 안인진)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천형 (차장)채권운용</u>  <신설>	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안인진 (과장)채권운용</u>  (주6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운용역) <u>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</u> 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